2021년도 하반기 주한 외국공관 정책설명회

2021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법 개정사항

수입식품정책과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부과 (21. 7. 1 개정)

- (기존) 지정검역물 외 축산물 수입신고 시 기존 수입국의 제품은 증명서 서식 협의 시점까지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유예
- (개선) 2022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은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부칙 <총리령 제1253호> 제2조 개정)

* (추진경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대상국(60개국)에 서한 발송(2020. 5월 ~ 6월, 현지실사과)

– 대상: 식육가공품(멸균), 유가공품, 알가공품

* 대상국 60개국 중 44개국 완료(73.3%)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개선 (21. 7. 1 개정)

- (기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소재지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 ×
- (개선) ① 수출국 법령에 따른 허가 · 등록 · 신고 등 증명서류 또는
  ②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 필요

* 대상: 시행일(2021. 7. 1.) 이후 신규등록 / 기존 등록 만료 → 갱신 등록 필요한 업소

정밀검사 실시 주기 개선 (21. 7. 1 개정)

- (기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수입식품 등
- (개선) 무작위표본검사 실적을 정밀검사 주기에 반영하여
  수입식품 검사업무 합리성 제고 및 업계 부담 완화

* 정밀검사 대상: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수입식품 등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사항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 (21. 8.17 입법예고)

- (기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신고 시 수출국 발급 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 (개선)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근거 마련, 영업자 편의 증대 및 위 변조 방지

계획 수입 신속 통관 요건 완화 (21. 8.17 입법예고)

- (기존) 우수수입업소의 수입식품이 장기간 부적합 없이 지속 수입되는 경우 서류/현장검사를 면제하는 계획수입신속통관 제도 운영 중

  * (요건) 1) 우수수입업소 등록 2)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 3) 검사 부적합 이력 없음

- (개선) 제도 적용 요건을 연 5회 수입 → 연평균 5회 수입으로 완화, 신속 통관 가능 범위 확대 추진

수출 축산물 안전성 지원

관련 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38조(수출 식품 등 안전성 지원)**

1. 식약처장은 수출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기준, 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수출자가 수출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
3. 수출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식품 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정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1. **(위생 증명 종류)**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분석증명서, 제조증명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증명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 증명서, 그 밖에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서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
3. **(발급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증명서는 식약처장이 발급

한국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 **(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 **(정부 및 영업자 역할)**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체, 농장에서 안전관리

1. 식약처 : 축산물 위생 정책 수립 및 시행, 위생 감시 및 수거검사 계획수립, 실험실 관리
2. 농식품부 : 질병 검역 및 방역 정책 수립
3. 지자체(17개 시·도) : 작업장 영업 허가, 위생 감시 및 점검, 수거 검사
4. 제조업소 : 자가품질검사, HACCP 운영 등 제품안전 관리
5. 농장 : 질병관리(소독), 위생관리

수출 현황

➢ 최근 3년간 한국산 축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 톤 / 백만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분유 등	76	223	93	239	104	273

- 주요 수출 축산물 : 조제분유, 우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삼계탕, 유청분말 등
- 출처 : KATI(농식품 수출 정보)

협조요청 사항

- 국가별 **수입축산물 검사기관 정보** 우리측에 공유(anjh@korea.kr)

  - 기관 명(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이메일 포함)

- 수입허용 절차 진행 중인 **한국산 축산물 신속 허용 처리**

- 국가별 **축산물 수입 규정 제·개정 정보** 우리측에 공유

해외제조업소(작업장) 현지실사

현지실사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1 현지실사 개요

목적: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현지 제조단계부터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 사전 차단

대상

- 수입식품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현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국내 · 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지실사 절차

계획 수립

- 실사 대상 선정
- 수출국과 현지실사 일정 등 협의
  * 업소 정보 확인 요청

사전 준비

- 점검관 확정
- 사전 교육 등 실시

현지 실사

- 시작 회의
- 서류 및 현장 점검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고시)
- 종료 회의

결과 조치

- 적합: 등록유지
- 개선필요: 시정요청, 수입검사 강화
- 부적합: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1 현지실사 개요

실사 전 조치사항

- 실사 거부, 방해, 기피 → 수입중단
- 등록취소 요청, 생산 · 수출중단 → 수입중단
- 폐업, 도산 · 파산, 해외제조사가 아니거나 시설이 없는 경우, 소재지 이전 → 등록취소

점검 방법

- 점검관이 해당 업소를 방문, 점검표에 따라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평가

  * 평가 기준: (적합) 85% 이상 (개선 필요) 70% 이상 85% 미만 (부적합) 70% 미만 또는 중요 항목 X 1개 이상

실사 후 조치사항

- 개선 필요* 또는 부적합의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수출국 정부에 통보

  * 시정 기한(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 내 결과 미 제출 또는 시정 미완료 시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2 '21년 추진경과

비대면 조사 법적 근거 마련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 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가능 * 수입식품법 제9조의2 신설(21.8.17)
- 비대면 조사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수입 중단 가능 * 수입식품법 제6조 개정(21.8.17)

21년 비대면 조사 추진

- 조사 기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조사 방법: 점검표, 공장 등록증, 증빙 서류 및 사진으로 평가

  * 제출기한: 식품 (최초) 6.30, (1차 연장) 8.31, (최종) 9.30
  축·수산물 (최초) 7.31, (1차 연장) 9.30, (최종) 10.31

- 결과 통보: 평가 종료 후 수출국 정부 · 해외제조업소에 결과 알림(11월말 예정)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3 '22년 추진방향

추진 방향

('21년) 비대면 조사(서류, 영상) → ('22년) 현지실사+비대면 조사(영상)

현지실사 추진

- 대상 선정: 통관 · 유통 부적합 이력, 위해 정보 등 분석을 통해 선정
- 계획 통보: 수출국 정부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상 알림('21.12초 예정)
- 요청사항: 해외제조업소 정보(업소 명 및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여부, 운영 여부(휴 · 폐업), 실사 수용 여부 등 회신 요청

  → 현지실사 수용한 경우 일정 조율(2개월 내)

공무 목적으로 현지 방문하는 경우 격리 기간 면제 등 협조 요청

수입식품 해썹(HACCP) 인증 제도

수입식품 해썹(HACCP) 인증제도

1 수입식품 해썹 개요

목적: 수입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식품 수입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신설(20.4월)

* 해썹을 적용하려는 해외제조업소(축산물 제외)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대상 및 시행일

* (자율) 대상: 해썹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시행일: '21.7.1

* (의무) 대상: 해외 배추김치 제조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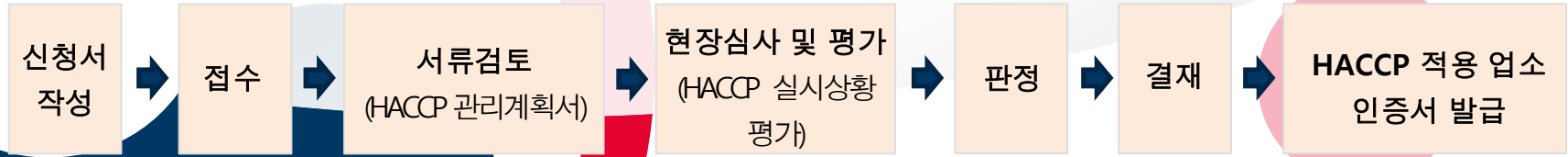
시행일: ('21년) 수입량 1만 톤 이상 → ('22년) 수입량 5천 톤 이상 →

('23년) 수입량 1천 톤 이상 → ('24년)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소

수입식품 해썹(HACCP) 인증제도

2 수입식품 해썹 인증절차

- 인증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 변경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사·평가 수행)
- 인증기준
  - *(자율)「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서 정한 기준('21.7.1 제정)
  - *(의무)「수입 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서 정한 기준('21.9.30 제정)
- 인증절차: 해외제조업소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 등 서류제출
  - → 인증기관은 서류 검토 후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 업소 평가
  - → 적합한 경우 HACCP 적용 업소로 인증 및 인증서 발급



수입식품 해썹(HACCP) 인증제도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제출서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제출처) • 홈페이지 신청(www.haccp.or.kr) (HACCP 인증 및 교육신청→심사신청/접수) • 전자우편(haccp@haccp.or.kr)	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②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1 해외제조업소 개요

목적 : ① 수입 전(前) 단계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보**하여 식품 수입

② 수입식품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시정을 요구를 위한 정보 수집



해외제조업소 등록 :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 또는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해외제조업소 정의 :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 ·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 (수산물 생산 ·가공하는 선박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등록 종류

(신규) 수입된 이력이 없는 업소를 새롭게 등록
(변경) 기 등록된 업소의 변경정보 적용
(갱신)(+변경) 유효기간 2년으로, 기간 만료 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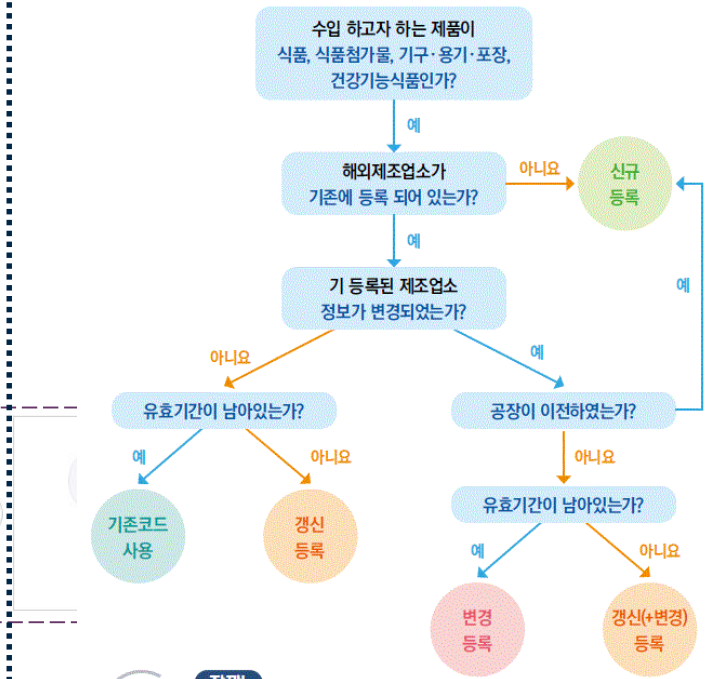
진행절차



① **[접수 > 검토] 처리기한 : 3일**

② **[승인 또는 반려] 승인 : 신청 시 입력했던 e-mail로 결과**
반려 : '마이페이지 ' 에서 반려 사유 확인 가능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3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출 서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1.6.30)

(개정 전)

수출국 발행 공장 확인증*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개정 후)

(필수)수출국 발행 공장 확인증*

다만, 농산물 포장 장소에 한해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 가능

*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Q 수출국 발행 공장확인증이 **제3국 언어**일 경우?

수출국 발행 공장 확인증(해당국가 언어)과 함께 **해외제조업소측의 공문**(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명시) **또는 공증 번역본**(번역 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 제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

법적 근거 및 추진 경과

1 법적 근거

수입식품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기준 변경 등으로 수출국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 필요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

* 시행규칙에 따라 위생 평가는 총 6단계 수행

❖ 수입위생평가 요건은 수출국 또는 축산물 별로 정하여 고시함

법적 근거 및 추진 경과

2 추진 경과

「수입식품법」 이후 진행중인 수입위생평가 : 총 56개국 121품목

- 대상: 식육, 원유, 알, 식육가공품(멸균 포함), 유가공품, 알가공품
- '21년 추진사항 : 설문서 발송(8개국), 답변서 검토 완료(2개국), 현지조사(2개국), 수입허용 결정(2개국)
- 효율적 평가 진행을 위해 '가금육'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통합설문서 운영('21.2월~)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관련 대상국 60개국 중 53개국 협의 완료, 7개국 진행 중

* 축산물(축산물가공품 포함)은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22.1.1.시행)

향후 계획 및 협조 사항

3 향후 계획

'22년 계획

- ❖ 수입위생평가 : 국내 및 국제기준 근거하여 진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 ❖ 답변서 제출국 → 동등성 평가 수행
- ❖ 답변서 검토 완료국 → 현지조사 실시
- ❖ 수입허용 완료 →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 시 개별 작업장 현지실사
- ❖ 농식품부와 통합 설문서 운영 확대(돼지고기) 및 현지실사 합동 점검(가능 시)

향후 계획 및 협조 사항

4 협조 사항

수출국 협조 사항

- 위생평가 진행국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조속히 요청자료 회신
- 현지조사·실사 시 대상국의 코로나19 상황, 점검자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 정보제공
- '22.1.1일 이후 선적되는 모든 축산물은 반드시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미제출 시 수입 불가)
- 수출 축산물의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제출*

*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 제출 → 미 회신국(17개국)은 연내 조속히 제출 요청

수입 수산물 위생 약정

수입검사관리과

외국과의 위생 약정

근거 (수입식품법 제37조)

외국기관과의 기관간 약정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 「수산물수출입위생약정」체결
- **등록시설** 통보 관리 및 **위생증명서 첨부** 의무

8개국과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운영 :

2001	2003	2005	2006	2013	2014	2019	2020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수입 수산물 약정 운영

위생 약정 운영 및 수입검사 관리 현황

(위생약정 운영)

- 약정의 원활한 이행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약정국간 실무회의 개최
  * (중국) 연 2회, (베트남) 연 1회, (기타국가) 필요 시
- 약정 협의 등 현안사항 사전 관계기관 협의(해수부, 수품원)
  * 약정국 회의 대책 협의, 위해 정보 검사 계획, 부적합 발생 사후 조치, 위생증명서 서식 변경 등
- 위생약정 개정 사항 검토

(수입검사 관리)

- 수산물의 기준 · 규격 변경 시 내용 통보
- 수입검사 부적합 통보 · 조치 및 개선 후 중단 해제 검토 등
  * 잠정중단 시설의 검사 관리 및 지방청 검사지시 등

수입중단 등 유예 통보 절차

위생안전 문제발생 등록 시설에 대한 조치

제1류 (일반요인)

- 마비성패류독소, 복어 독, OTC,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세균수, 대장균군, 이산화황, 중금속 및 금속이물(비인위적) 등
- 중단대상 : 부적합 **해당품목** 수입중단
- 원인 발생조사 및 1개월 이상 개선 관리 후 조치결과 통보 및 해제 요청

  * (수입국) 수출국의 해제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해제

제2류 (중대요인)

-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그린 등 금지물질, 오 · 노 · 페플록사신, 살모넬라, CO 및 금속 · 이물질(인위적), 강제 물주입 등
- 중단대상 : **해당 등록시설에** 대한 수입 잠정 중단
- 부적합 원인 발생조사 및 3개월 이상 개선 관리 후 조치결과 통보 및 해제요청

  * (수입국) 수출국의 해제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해제

신규 위생 약정 체결 시 운영 방안

위생 약정 체결 후 접촉창구 개설로 지속적 협의 체계 구축

(약정 정례회의 개최) 약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의 내용은 합의 의사록 작성(년 1~2회)

(기술 협의) 검사기준, 제조시설 점검관 교육, 위생관리 기준 등 양국이 정보에 대해 상호 협의 및 지원

(현지실사) 해외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주관으로 관리 감독하나 상대국은 매년 1~2회 현지시설에 대해 점검 실시

(접촉창구 운영) 해외제조시설에 대한 통보, 승인시설 전산 관리 및 공개, 변경등록, 관련기관 협의 등 실무 접촉장구 운영

(사후관리)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금지,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검토 등 사후관리 조치

위생 약정 체결 수출국 대우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비약정국은 수입자 등 개인이 등록하고 2년마다 재갱신하여야 하나 약정국은 수출국이 관리

* 재 갱신 없이 수출국 정부기관이 통보한 신규, 변경, 취소 정보만 관리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비약정국은 해외제조업소 등에 현지 실사 및 수입중단 조치 중이나 약정국은 수출국이 모니터링 점검(추진)

* 부적합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양국간 현지실사 협의

정밀검사

국내외 위해 정보 발생 시 비약정국에 비해 약정국은 1/2 수준으로 정밀검사를 완화하여 시행

* 부적합 발생 시설에 재수입시 비약정국은 10회, 약정국은 5회 정밀검사

전자위생증명서

전자위생증명서 상호인정(수출·입)

그 간 추진경과

-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가능하도록 「수입식품법」 개정('18.2월)
- 한-호주 전자위생증명서 MOU 체결('19.6월) -> 최초 시행('21.9월)
- 한-칠레 전자위생증명서 MOU 체결('21.8월) -> 시스템 구축 예정('21.12월)
  * 수산물도 함께 시스템 구축 중

✓ 정부간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 구축 필요

- ✓ 수출·입 위생증명서(원본) 위·변조 방지
- ✓ 코로나19 물류 지연으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 ✓ 국제우편 비용 절감에 따른 업계 경제적 부담 감소

✓ 전자위생증명서 상호인정 국가 및 품목 확대 추진('21년~)

전자위생증명서 상호인정

✓ 수입자 등이 **종이 위생증명서 제출 없이** 유니패스(관세청 연계)로 **수입신고 가능**



잔류농약 안전관리

잔류농약 안전관리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한다.

1.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 다성분 시험법의 바.1).바) 및 바.2).사)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검사 대상 농약

① 정밀검사(「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별표 3])

- 다이아지논(Diazinon), 디디티(DDT) 등 69종 농약
-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또는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농약은 [별표 3]에 추가

② 정밀검사-단성분농약(「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별표 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3. 단성분 시험법에 따른 103종의 농약(21.9.30.기준) 중 국내외 검출정보, 국내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검사대상 농약 선정
- 최초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

③ 무작위표본검사(「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8조제1항2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 다성분 시험법에 따른 511종의 농약(21.9.30.기준)
-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시, 해당 농산물에 대해 최초정밀검사시 부적합 농약 포함하여 검사(추후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시 [별표3]에 반영)

수출 축산물 위해 · 회수 정보 관련 통보 협조 요청

협조 요청 사항

위해·회수 정보 통보

근거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6조제1항

✓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수출축산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자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함

① 잔류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오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② ①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회수를 하거나 회수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수입유통안전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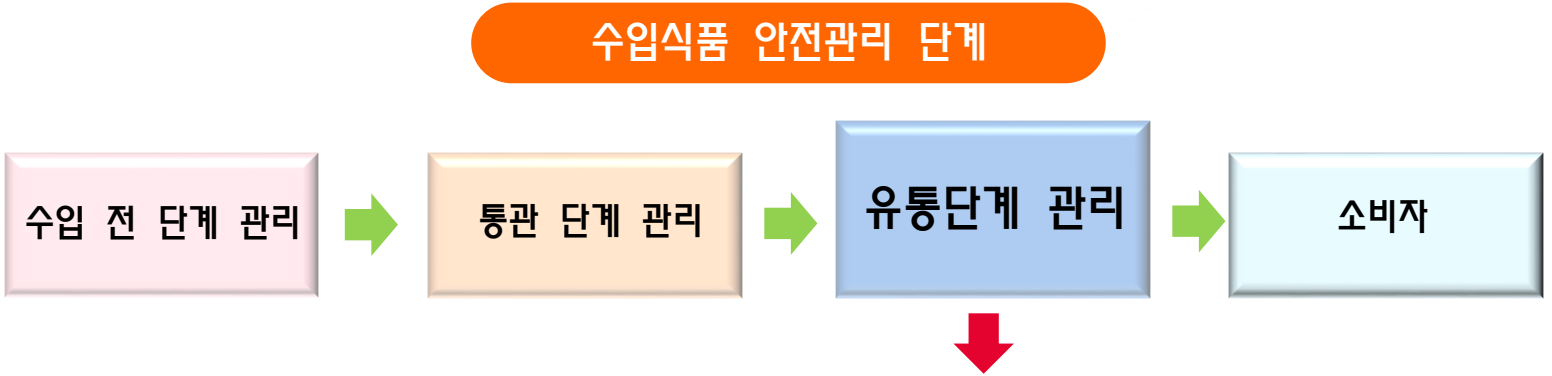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Ⅰ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지도 · 점검 체계

Ⅱ 유통 수입식품 수거 · 검사 체계

Ⅲ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체계



해외제조업소등의 관리와 통관 단계 수입검사 등을 거쳐 국내 유통 중에 있는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관리

영업자 지도·점검

- 부정·불량식품 유통 행위
- 부당 표시 광고 행위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유통 수입식품 수거 ·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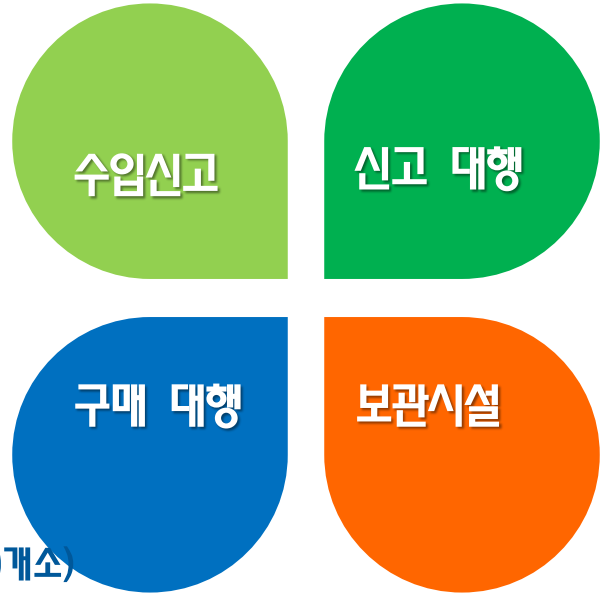
- 국·내외 위해 정보와 관련된 수입식품
- 특정 시기 다소비 수입식품
-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장기간 서류통관 수입식품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 특정 기능성 표방 제품 등 구매 검사
- 부정물질 검출 제품 통관 차단 조치
- 소비자 주의사항 홍보

Ⅰ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지도 · 점검 체계

영업의 종류 및 현황 (2021.9, 60,345개소)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46,624개소)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1,046개소)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사이버 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11,880개소)

-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보관하는 영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795개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영업자 지도 · 점검 대상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지도·점검 업무 수행

지도·점검 대상 선정

- 반복적인 법 위반업체
- 최근 3년간 점검 이력 없는 수입 상위 업체
- 1399 등 민원 제보

II 유통 수입식품 수거 · 검사 체계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대상

국내외 위해 정보 관련 수입식품	해외 위해 정보,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제품 정보 위해 우려 이슈가 있는 수입식품 정보 등
특정 시기 다소비 수입식품	설, 추석 등 특정시기에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수입량 증가 품목
유통 중 위해 물질 검출 이력 제품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서, 항생물질 등 위해 물질 검출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등
장기간 서류 검사 통관 제품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어 장기간 서류 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

부적합 수입식품 조치

❖ 위해 식품 판매차단 및 조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보도자료 배포(회수 1, 2등급 대상)

식품안전나라, 회수 사실 공개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사례)

❖ 위해 정보 발생에 따른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방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

무신고 수입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차단하여 국민 건강 보호
→ 돼지고기 함유 수입식품(소시지 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킬 수 있어 단속 강화

★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외국인 밀집지역 등** 외국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소규모 업소(자유업, 300㎡미만)

불법 반입 무신고 축산물 유통 단속 및 지도·점검(연중)

- 수입 차단
  ASF 발생국 수입금지
- 지도점검
  상시 점검 (월2회, 지자체)
  합동점검 (연2회)
- 홍보 및 협력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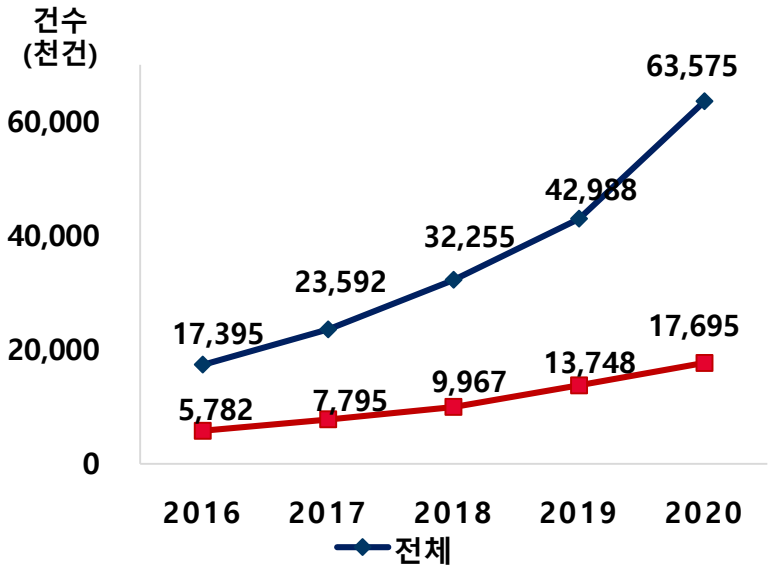
Ⅲ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

해외직구식품 현황

현황

- 17,695천 건 반입('20) : '16년 대비 3배, '19년 대비 2배 증가
- 전체 직구의 30%로 소비자 구매 제품 1순위 차지

★ **해외직구란? 소비자가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행위**



* 출처 : e나라 지표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관세청)

<해외 직구 증가 원인>

1. 저렴한 가격, 다양한 제품 구매 가능
2. 인터넷 발달 가속화로 온라인 쇼핑문화 정착
3. COVID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해외직구식품 구매 검사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검사(특정 기능성 표방 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직접 검사, 위탁 검사 병행하여 구매 검사 확대('20: 1.6천건 → '21: 3천건)

구 분	직접 검사(1,700건)	위탁 검사(1,300건)
검사대상	성기능,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 표방 식품 위주 * 기획 검사 포함	다소비식품(영양제,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취약계층(분유, 젤리 등), 국내 이슈 제품(시서스 등), 식품용 기구
검사항목	부정물질, 우피 유래	기준규격(이물, 영양성분, 압착 강도 등)
검사기관	평가원, 지방청	식약처 공인 검사 기관

☞ 부적합 제품 관세청 통관 차단 요청 및 **'위해 식품 차단 목록' 인터넷 공개(식품안전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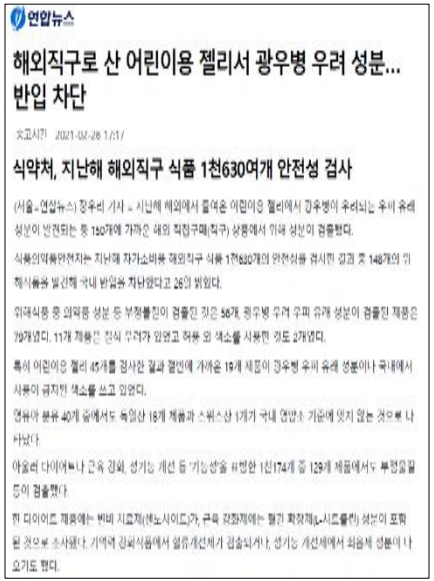
* 「관세법」 제237조제3호 :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해외직구식품 대국민 홍보(1)

보도자료, 동영상 송출, 대국민공모전, 카드 뉴스 및 웹툰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

→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위해 식품 차단 목록 금지 성분 확인 요청 및 정식 수입식품 구매 유도


연합뉴스

해외직구로 산 어린이용 젤리서 광우병 우려 성분... 반입 차단

☆고시기 2021-02-26 1:51

식약처,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 1천630여개 안전성 검사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지난해 해외에서 들여온 어린이용 젤리에서 광우병이 우려되는 우피 유래 성분이 반전되는 등 150개에 가까운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식품 1천630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48개의 위해식품을 발견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위해식품 중 의약품 성분 등 부정불량이 검출된 것은 58개, 광우병 우려 우피 유래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79개였다. 11개 제품은 전식 우려가 있었고 허용 외 색소를 사용한 것도 2개였다.

특히 어린이용 젤리 45개를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개 제품이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이나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쓰고 있었다.

영유아 분유 40개 중에서도 독일산 18개 제품과 스웨스산 1개가 국내 영양소 기준에 못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이어트나 근육 강화, 성기능 개선 등 기능성을 표방한 1천174개 중 129개 제품에서도 부정검출 등이 검출됐다.

한 다이어트 제품에는 비비 치료제(센노사이드)가, 근육 강화제에는 혈관 확장제(L-시트룰린)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억력 강화식품에서 혈류개선제가 검출되거나, 성기능 개선제에서 허용치 성분이 나오기도 했다.

▲보도자료
(해외직구식품 구매 검사 발표)



▲동영상
(서울정부청사 옥외광고 등)



▲ 카드뉴스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 대국민 공모전
(명칭&영상 공모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해외직구식품 대국민 홍보(2)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개설·운영('21.9.30)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직구식품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정보 사이트 개편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식약처 통합망정보 및 관계부처 정보 연계

제품정보	위해 정보	국제거래 상담	도움 정보
통관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국내 건강기능식품	해외 위해 식품 리콜(회수)정보 위해 정보 처리 속보	자율분쟁해결절차 상담 · 피해예방정보	독성 정보 안전정보 기타 도움 정보 등
(식약처)	(식약처,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처, 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해외직구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구매 단계

- 소비자 친화형 정보제공 강화
- 유관기관 협조 근거(방통위 등 차단요청 근거) 마련
- 통신판매중개업자 안전관리 체계 마련

통관 단계

- (관세청) 협업 검사 인력 증원 및 집중 검사 확대
- 위해 성분 지정·해제 및 위해 식품 차단 목록 관리

유통단계

- 해외직구식품 온라인 모니터링 검사 확대
-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근거 입법 마련 (국내 사업자 소비자 피해 책임 부과 등)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